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3- 2호

「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3년 2월 3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조문번호 중복에 따라 조문번호를 정비

2. 주요내용

- 중복된 조문번호를 순서에 맞게 개정(안 제24조)

3. 개정조례안: 별도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3. 2. 3. ~ 2023. 2. 8.(6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1부.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⑭ (생략) ⑭ ~ ⑰ (생략)	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⑭ (현행과 같음) ⑮ ~ ⑱ (현행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)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____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 _____

○ 전 화 번 호 : ____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